

제429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0일(수)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8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7)
-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1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2)
-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진호 외 51,5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3)
-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2,8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2)
-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공재현 외 50,73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46)
-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최유리 외 52,3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7)

상정된 안건

-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8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7) 2
-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1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2) 2
-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진호 외 51,5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3) 2
-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2,8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2) 2
-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공재현 외 50,73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46) 2
-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최유리 외 52,3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7) 2

○소위원장 김장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2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운영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심사는 해당 청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의결 유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여 처리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나 국회가 처리할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취지에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이 법안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심사를 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소위에 회부된 청원이 6건입니다.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심사를 위해서 방통위 사무처장직무대리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청원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할 때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켜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8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7)

2.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1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32)

3.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진호 외 51,5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3)

4.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2,8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2)

5.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공재현 외 50,73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6)

6.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최유리 외 52,3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7)

○**소위원장 김장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6항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6건의 청원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해 주실까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유튜브 등 방송플랫폼 제재 관련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경과나 청원 취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청원 취지를 보시면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인데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 플랫폼 방송을 운영하는자의 기초 자격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입니다. 그리고 정치 유튜브 채널 차별 발언에 대해서 제재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사실확인 없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체계상 형법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심사되거나 법안이 개정이 되면 청원의 취지가 일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유튜브에 대한 기초 자격 정립이라든가 유튜브 채널 자체에 대한 심의규정을 마련하자는 내용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에 따라서 통신심의 대상은 정보콘텐츠에 관련돼 있는 것이지 유튜버의 자격이나 채널의 적정성 자체를 심사하는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기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면 특정 개인의 온라인 매체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게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특정 채널이—유튜브입니다—유튜브를 제작·송출하는 콘텐츠 내용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채널 자체의 불법성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별도 심의 절차를 규정하기보다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 기준, 처벌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청원 내용별로 보시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청원 관련해서는, 청원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가 대중매체 종사자로서 기초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규정을 보면 범죄경력을 이유로 정보 유통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신심의의 기준은 유통되는 정보에 맞춰져 있고 정보유통자에 관한 사항은 심의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내용과 관계없이 온라인 매체 활동을 제한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선택이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입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온라인 매체 활동을 제한하려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이용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또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회적 비난 가능성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제재 대상 범죄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두 번째 청원 관련해서는, 청원인은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유통자에 대한 심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직업선택·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청원인은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기존 대중매체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행법상 규정으로도 불법정보인 경우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심의·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방통위는 방심위 심의를 거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연예인 등에 대해 스토킹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서 불법 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이 우리 위원회에 다수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 개정 심사 등을 통해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청원은 소위 사이버 래커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

든가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에 따라서 엄정한 수사를 하게 한다든가 플랫폼 차원의 제재를 한다든가 재발 방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데 이 또한 개정안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청원인은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데 허위조작정보 유포·명예훼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망법도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쪽입니다.

청원인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심의 주체나 그다음에 규제방안의 재확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채널을 직접 제한하는, 정보가 아닌 유튜브 채널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채널 자체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고 콘텐츠와 별개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청원인은 심의 주체, 규제방안 확립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방통위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부·정지·제한 등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차별·비하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해당이 되고 심의 규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으로도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 과정에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청원을 심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사무처장직무대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청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청원과 관련해서 정보유통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 논의를 통해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원, 네 번째 청원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 논의를 통해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이정현입니다.

청원인들께서 청원을 하신 취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유튜브 방송들이 특별한 제재 없이 계속 송출되고 있고 또 그게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역시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에 동의합니다. 콘텐츠의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 개인의 온라인 매체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또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레커를 비롯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몰수·추징 또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현재 대표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심도 있게 우리 소위와 또 법안심사소위, 과방위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우리 국민들의 청원과 우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관련 법안들 심사에 속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 조인철입니다.

지금 이정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튜브 방송이라고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방송국이나 방송사들은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이 항상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런 자격 기준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유튜브 방송이라고 우리가 지침을 하려고 하면 방송에 맞는 자격 기준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매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구독자 수라든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자격 제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손해배상 청구 부분도 훨씬 더 강화해서 경제적 이익 몰수뿐만이 아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의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정부 측에서도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1인 방송에 대해서도 자격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이상희 위원님.

○이상희 위원 이정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상당한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인철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유튜브 방송이라는 말이 수용자가 듣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언론의 범주로 또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또 사실에 대한 국

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그런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이라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총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사실 문턱을 높여서 이를 방지하자 이런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방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못 따라가고 그런 것도 문제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급속한 문화의 속도에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규제를 해서 문턱을 높인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특정 계층의 유튜브에 대한 독점 이런 현상을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정현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의견 주신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이준석 위원님.**

○**이준석 위원** 사실 저희 정치인들도 유튜브에서 어떤 사실보도에 있어서 때로는 허위 사실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사자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피해는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피해구제는 나중에 늦게 이루어지는 그 사항 때문에 아마 이런 청원들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나 인권침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후에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것은 특히 선거나 아주 민감한 상황 속에서 즉각적인 조치 또는 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내에서도 거기 영상 보다 보면 이 채널은 공영방송이다라고 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뢰도를 보증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우리가 오히려 전 세계에 어떤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기준을 몇 가지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에 대해 가지고 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본인이 공무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으로 다툼을 건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것들도 다 거기에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선거 다 지나고 나서 그것 허위사실 교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있고 저희가 대선도 이번에 치러 봤지만 갈수록 혼탁해지는 이유가 그 시차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익명 계정 생성해 가지고 유포하고 나중에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도망가 버리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물론 청원인들께서 하신 취지와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 자체가 과방위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채널의 생성 및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는 이미 유튜브가 본인들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널에 대해 가지고는 동일인이 또는 동일 주체가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 했을 때 동일

인임이 입증되면 바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원인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성범죄에 대해 가지고 적용되는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보면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는 유튜브가 채널 가이드라인을 작동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튜브 측에다가, 이것도 알고리즘처럼 비밀을 얘기해 주지 않겠지만 성범죄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이런 것 운영하고 있을 때는 실제 가이드라인에 이걸 적용할 생각이 있느냐 정도는 문의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방송도 심의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영화계는 그러면 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잘 아는 것처럼 모 배우는 미성년자 성매매 때문에 영화계에서 퇴출되었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슬그머니 복귀해 가지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청원인들이 갖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유튜브는 기준이 뭐냐 정도는 저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기조관님, 방통위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유튜브가 어떻게 지금 채널 차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특히 지금 저희가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채널에 대해서는 나중에 동일 개설자가 한다면 차단한다 이것까지는 아는데 청원인들이 물어보는 성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서 청원인들에게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그것 관련해서 제가 좀 덧붙이자면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페이스북하고 X, 인스타그램 이런 데 대해서는 이미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계정이 인플루언서다,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자체 규정을 바탕으로 그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하기는.

그런 것 방통위는 파악을 못 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아직은 파악은 못 했고요.

○**소위원장 김장겸** 지금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으니까 이것 파악 한번 해 보는 게……

○**이준석 위원** 회사별 가이드라인을 한번 다 정리해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사업자 쪽에다가 자료제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그러니까 이게 각 사업자의 규정 이런 것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유튜브에는 그런 유사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유튜브는 성범죄 관

련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보고.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를 기준으로 해야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자격기준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주희 위원님.

○이주희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 다 동감하는 취지의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법에서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라든지 또는 사회봉사명령이라든지 각종, 몇 년 동안의 취업제한이라든지 실제 법원의 판결에서는 일정 정도 외부의 어떤 활동을 좀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같이 병행되고는 있는데 그 조치가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유튜브 등의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과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한해 나가고 규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법적 논의가 미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좀 더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대체로 내용 규제, 일종의 채널 또는 채널의 게시자, 게재자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또 속도에 있어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늦춰지면서 실질적인 구제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다 하신 것 같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 문제 이걸 또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법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십수 개, 거의 한 이십여 개 이상의 관련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좀 더 준비를 하고 있고 곧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차원에서 좀 신속하게 그 관련 규율할 수 있는 법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첫 번째, 성범죄 관련해서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부규정이나 이런 걸 방통위에서 파악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지요.

그리고 아까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방송 준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정현 위원 즉각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에도……

○소위원장 김장겸 예, 그게 아마 좀 필요할 것 같고, 오늘은 우리가 청원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부분에서도 물론 앞의 사항하고 비슷하지만……

일단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이주희 위원님.

○이주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초 사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2번, 3번, 4번……

○소위원장 김장겸 예, 비슷합니다.

○이주희 위원 비슷해서 사실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그러시지요.

○이주희 위원 저는 규제 방향이 결국에는 우리가 정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통망법상으로도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심의라든지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의 신속성, 실제 그 조치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다시 재검토는 해 봐야 되겠으나 어쨌거나 규율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통망법상 규정은 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지금 여기서 문제삼고 있는 것도 불법정보인지 아니면 혀위조작정보인지 그리고 혀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그 혀위정보가 어떻게 보면 불법성까지 나아가는 여러 층위가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실 때 그 사태의 심각성에 주목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제기를 하셨고 정보의 성격에 대해서 면밀하게 논하지는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관련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으니 함께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1·2·3·4 다 토클 해서 말씀을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 지금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사전규제를 할 것이나 사후규제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보면 사후규제를 해 왔는데 그것들이 상당히 실효적이지 못한 결과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워낙 한번 터지고 나면 그 피해 규모는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요새는 오히려 사전규제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송이라고 대부분 하면서도 방송에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방송이라는 측면에서,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나 해서 어떤 내용이든 다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을 수는 없는 거고 법률 내에서, 사회적 통념 내에서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도 청원 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성범죄자가 마음껏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뭘 해도 되는 거냐라는 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 사실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인플루언서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튜브 개설을 했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송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까 이준석 위원님은 유튜브 자체의 가이드라인,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상임위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구글코리아 대표인가 그분 불러다가 몇 번을 이야기하고 의원 사무실에 불러서도 이야기하는데 이분의 역할은 의원들한테 이야기 듣고 그것을 그냥 전달하고 말고 하는 그게 본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그 역할이다 정도, 브로커 역할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유명무실해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그것 강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조인철 위원 그것도 거의 유명무실돼 있어서 지정대리인 제도라는 것을 강화하는 법을 제가 발의해 놓은 상태고, 유튜브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히 불완전하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마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회사 내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결과 조치를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코리아 측에 제가 요구했던 게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한국 사이트 관련해서 누가, 몇 명이 하느냐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다’가 그 사람들의 공식적인 답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규제 수단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조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 동감할 수 없는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어찌 보면 천부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아니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켰을 때 그 콘텐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있겠으나 그 사람의 자격을 문제 삼아서 아예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민주주의 작동 원리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절대 그럴 수는 없고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그런 잘못된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그 콘텐츠의 질과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하고 제재하고 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노력을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들도 적극적으로 잘못된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앞서 이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회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작업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이상희 위원님.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2번, 3번, 4번까지 다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장겸 예, 말씀을 다 뚱뚱그려서.

○이상희 위원 오늘 이 청원에 대한 부분들의 적합성 여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안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 올려서 본격적으로 법안을 얘기하고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청원에 대한 심사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유튜브에 대한 폐해는 좀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청원만 보더라도 연예 전문 기자에 대한 부분들은, 유튜브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재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하나의 산업 분야 비슷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이것을 자격을 만

든다 이렇게 되면 또 큰 혼란이 생기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점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우선 2번의 연예 전문 기자 유튜브 활동에 대한 자체는 사생활 폭로라든가 자살, 정신적 피해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제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사전적이라든가 일률적 규제를 하게 되면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것이고.

청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국가가 유튜브 자격 심사하는 그 자체가 겸연쩍은 논란도 초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가 돼 있고 심사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청원을 통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상 이 부분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인격 살인적 방송, 이런 것들은 좀 강력하게 제재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겸토한 의견인데 이 또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에, 지금도 편법을 저질러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집행의 한계이고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사업적 규제 강화, 이게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축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 좀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치 유튜브, 이거는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징벌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 탄압이라든가 국민의 알권리를 규제한다거나 입틀막이라든가 이런 탄압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법 자체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법이 올라오면 거기서 또 토론하면 청원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참하시고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지금 이정현 위원님께서 언론중재법 언급하셨는데 특히 유튜브는 아마도 정통망법 개정으로 준비될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그게 언론중재법하고는 무관하지요, 유튜브는?

○이주희 위원 지금 개선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언론이 하는 유튜브 채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이준석 위원님.

○이준석 위원 사실 제가 3년 전에 대선 할 때 언론중재법이 워낙 핫했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양측의 선입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에서 그 논란이 될 부분에 이것을 끼워 넣어 가지고 오히려 또 산으로 갈 가능성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우려가 우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방송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론보도나 아니면 정정보도의 기능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유튜브를 통한 저널리즘의 현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형사적으로 뭔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동일하게 유포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사실 그들의 콘텐츠 규제 가이드라인이고 때로는 그들의 상업성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불건전한데 많이 팔릴 것 같으면 또 살려 놓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 사실 피해자 구제 또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내신 징벌적 배상 이런 법안 같은 경우에도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사전적 규제 또는 동시적으로 이 사안에 나와 있는 정보는 이미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공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적 조처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의원실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위원회로 같이 올려서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장겸 예.

○이주희 위원 지금 이준석 위원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사전에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면 이게 또 사전 검열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인데 그 것은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최대한 함양해 나가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훈련과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모델 케이스가 몇 개 나오면 된다고 보는 게 이번에 쓰양 사건 이런 것들도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린, 물론 이준석 위원님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서 자체 규정이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것 우선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해외는 어떨까? 우리가 국제 기준에, 글로벌 기준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방통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기초 자격, 지금 우리 이야기 나온 자격 요건과 관련된 혹시 해외 사례가 있는지 혹은 1인 미디어 운영자의 자격을 규제하거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그런 것을 한번 방통위에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6월 달 세계일보 기사에 보면 유럽연합에서 인플루언서를 단순한 창작자가 아니고 상업적·사회적 책임이 되는 영향력 행사자로 보는 그런 기사가 났거든요,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상응하는 규제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지난 6월 달에 났어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방통위 실무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조인철 위원님 구글을 불렀는데 구글이 그냥 말이 대리인이지 브로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위 국내 대리인 지정 강화, 이것 저도 사실은 법안을 제출했고 조인철 의원님도 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법안이 계속되는데 조인철 위원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구글을 한번 불러 가지고 이해관계자……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저희 청원소위원회 들어온 것 6건 중의 4건이 유튜브란 말이에요.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 조사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튜브가 국내 모바일 앱 이용자 수 1위라는 조사도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것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이런 걸 한번, 구글 관계자가 브로커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관계자를 한번

불러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조인철 위원 거의 이야기 들을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들을 수가 없어요?

○조인철 위원 아니, 이야기를 거의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장겸 그래요? 구글이든 어디든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보는……

○이준석 위원 그래서 류희림 위원장이 가지고 물어보고 한 것 아닙니까, 워싱턴 가지고 그때.

○소위원장 김장겸 직접 가 가지고?

○이준석 위원 마크 뮤언가 그 사람 저도 만나 봤는데 가서 그 사람 만나도 약간 애매한 소리를 합니다.

○조인철 위원 구글코리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사람들은 영업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휘 위원 책임을 안 지려 그래요.

○조인철 위원 책임 없이 그냥 영업만 하는 사람이어 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이상휘 위원 장사 너무 잘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지금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준석 위원 그래서 지렛대를 만들려고 그러면 입법 추진 의지가 보여야 그다음에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들어 보자는 안 할 것이다.

○소위원장 김장겸 그러니까 조인철 의원님 법안을 내가 구체적으로 안 읽어 봤지만 그런 법안, 저도 국내 대리인 지정 강화 법안을 내놨거든요. 그런 법안을 가지고 압박, 압박을 한다고 표현하면 잘못된 거고. 그렇지요? 좌우지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지렛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준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장겸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방통위에서 해외 실태, 기준 이런 기초자료하고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일단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정보 유통자,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미국이나 EU 같은 주요국에는 당연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수조사를 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콘텐츠에 대한 규제 부분은, 사실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는 대표적으로 EU에 DSA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불법정보 유통과 관련해서 사업자에 책임을 강하게 부여하고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 제한 등의 조치를 사업자가 하도록 하고 그 조치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정부, 규제기관이 관리감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규제인데 또 그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전면적인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별되는 규제 체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상반되네요.

○이상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적절하게 믹스하면 되겠네요.

○소위원장 김장겸 그러면 제1항부터 4항까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두 번째 자료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댓글 작성 시에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국적을 알 수 없는 댓글로 인해서 여론 왜곡이나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대해서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의무화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걸 파악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 대한민국 관련해서 괜히 혼란과 오해가 발생할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쪽입니다.

청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 왜곡, 허위정보, 악성 댓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적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용은 검토보고 요지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청원과 유사한 취지에서 이용·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국가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도 우리 위원회에 현재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런 법안 심사를 통해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정부 측 의견.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함으로써 여론 왜곡을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적 표기를 의무화할 경우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또한 국적 확인을 위해 현실적으로는 접속지 기준으로 국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가상사설망 등을 통한 우회 접속 시 정확한 국적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청원의 취지는 일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과 또 부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태니까 그 법안 발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휘 위원** 의견 같아합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다른 분……

이준석 위원님.

○**이준석 위원** 이게 IP를 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속지로 가겠다는 건데, 아마 이 청원인들이 가장 궁금한 점은 과연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국적이 다른 사람이 개입하느냐를 검증하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거주자, 국외 거주자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국적이 어디냐, 우리 주권자로서 사실 정치 참여가 보장된 사람이냐 아니면 외국의 다른 세력 아니면 개인이 정치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원인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속지보다는 속인 주의 중심으로 한번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예 기사에 대해 가지고 네이버 기준으로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한 지가 좀 되었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비방성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팬클럽 간의 분쟁이라든지 실제와 관계없는 부분으로 흐르는 경향성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에 대한 의견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원 심사를 하면서 제한적인 형태로 한번 고민을 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합니다. 아까 제가 유튜브 영상 관련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나중에 피해가 구제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했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공직선거일을 90일 앞두고는 선거법에서 AI로 생성된 콘텐츠도 올리지 못하는 규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의인화해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선거에 영향 끼칠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마찬가지로 저는 90일 또는 공직선거운동 기간 14일 아니면 21일 정도라도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는 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치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제약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염증적으로 반응하는데 이 의구심은 한 번쯤은 해소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위원님은 평상시보다는 선거 때만이라도 그것을 제한적으로……

○**이준석 위원** 그래서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공직선거운동 기간, 내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14일 정도는 그것을…… 국내·국외를 표시한다 이것은 좀 차별적인 기능이라 생각하지만 해외 국적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사회 기사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14일 동안 못하게 한다 이 정도는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살 관련 기사에 대한 조처나 연예 관련 기사의 조처 등과 동등한 선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이게 국내 플랫폼하고 해외 플랫폼하고 이런 부분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 플랫폼은 지금 말씀하신 것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구글이나 이런 부분의 댓글 관련해서는……

○**이준석 위원** 저는 우선 국내에 적용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국내 것만 먼저 하자는 법안을 따로 발의하시면 되고.

○**이준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장겸** 조인철 위원님부터 먼저……

○**조인철 위원** 국가를 표시하는 실익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실명화하자는 것의 일부분만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정보를 최소한으로라도, 국적이라도 밝혀라 그리고 댓글을 달아라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준석 위원** 우리 국적자가 아니면 한동안 못 달게 하는 거지요.

○**조인철 위원**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아까 제가 유튜브 사전 통제 거기에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 댓글 다는 데에 국적을 표시하고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악용될 수도……

그러니까 외국이, 특정 세력들이 우리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그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한테 개입했다든지 미국 선거 때도 보면 러시아가 개입했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한 건지…… 이걸 해서 얻는 것보다는, 별 소득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지 여기서 이게 좋으니까 법안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원장 김장겸** 댓글로 여론 조작을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무슨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런 의혹이 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댓글로 조작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국적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우리 국내 플랫폼에서는 국적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댓글조차도 정체를 밝히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김장겸** 그때 그게 국내 플랫폼이었지요.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이같은 청원을 제출하신 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 반감을 조장할 의도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관련 규제라든지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가라는 생각도 저는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서 우회 접속을 하면 얼마든지 국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나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설령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VPN을 이용해서 한국 국적으로 바꿔서 개입하거나 계속해서 댓글을 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기술적으로 한다면 못 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청원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보다는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또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가는 것이 맞고 우리의 논의는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생각합니다.

○**이상희 위원** 찬성합니다.

○**이준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소위원장 김장겸** 예.

○**이준석 위원** 아까 그게 속지와 속인의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VPN으로 들어오는 건 아마 속지의 개념으로 외국인이 한국인인 척하는 것일 테고, 저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저희가 과방위 차원에서 이런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한 게요, 가장 논쟁적이었던 기사 몇 개를 샘플링 해 가지고 실제 거기에 속인 기준으로 외국인 댓글 비중이 얼마나 됐었는지 정도를 저희가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과방위에선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방통위에서 요청한 적도 없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제 기억으로는 과방위에서 관련돼서 논의를 하신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나 사업자한테 요구를하거나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 저도 아까 두 분 위원님의 우려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몇 개의 논쟁적인 기사에 대해 가지고 익명화된 상태로 단순히 그 통계 같은 것을 한번 받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상이 없었으면 이 청원인이 가지고 있던 의문 자체를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소해 주면 되는 것이고 논쟁적인 글에 실제로 다른 글보다 외국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그러면 그것은…… 그걸 밖에 공개할 이유는 없고 저희가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김장겸** 그것도 좋고요. 저는 이것을 아까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지렛대로 삼았으면 좋은 게, 지금 이게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강화 이런 것하고 다 관련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국내 플랫폼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고 아마 법안을 발의하신 분은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특히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강화뿐만 아니라 재판권 관할을 국내 법원으로 하게끔 구글이나 혹은 해외 플랫폼을 그 안의 내부 규정을 바꾸도록 그렇게 해야 청원인을 비롯해서 아까 조인철 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뭔가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단순히 국적을 표시하니 안 하니 이 문제보다는 이걸 우리가 지렛대로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면서 관련 해외 플랫폼 불러서 이야기도 좀 듣고……

특히 재판관할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명예훼손 이런 것과 다 관련돼 있거든. 아니, 해외 플랫폼 밑에 댓글 짹 썼는데 이거 고소하려면 미국 법원에서 해라, 파라과이 법원에서 해라 아래 버리잖아요. 지금 나무위키 같은 건 그냥 파라과이 법원에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하고 전부 다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6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마지막 청원은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공영방송은 기본적으로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MBC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일탈한 MBC의 폐방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3쪽,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헌법과 방송법 등에 따라서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해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 제재는 방통위, 방심위 등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3년, 5년마다 재허가 심사라는가 재허가 거부 등을 할 수 있는데 국회가 특정하게 대집행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헌법적 가치까지 감안해서 현행 심의·제재 절차 내에서 처리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4쪽입니다.

내용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요청이 있습니다만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방심위의 심의와 방통위 등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정부 측 의견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등 방송 내용은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서 방심위가 심의·의결하고 방통위는 그 결정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가 이러한 제재를 받은 경우 방송평가 등을 통해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위반 등에 대한 사항은 현행 심의·제재 그리고 재허가의 절차가 정비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 오늘 6건 중에 1건도 의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소위원장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조인철 위원 그래서 이번 건은 하나를 의결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회의 불부의, 타당성 결여.

정부 측 의견을 보거나 아니면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거나 별로 타당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 특정 정치적 상황 속에서 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불부의를 청합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이상희 위원님.

○이상희 위원 청원 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MBC는 그러한 역할을 조장했지 않느냐, 그래서 폐방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논리의 청원 요지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폐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헌법 21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우리는 이걸 성찰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이러한 부분들로 논쟁을 벌여서 만들어 나가야 될 일이지 이것들이 자칫하면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한 부분들은 거론하지 않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문제가 청원소위에 올라올 정도로 편향성이 심했고 갈등에 대한 여지가 많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공정성 그리고 적합성,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 청원의 취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본회의 불부의,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저는 MBC가 민영방송인 것 같으면 이렇게 민주당 방송 혹은 언론노조 방송, 민노총 방송을 해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CNN이나 폭스뉴스가 서로 상반되는 입장, 이념적 척도에서 서로 다른 쪽에 서 가지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앞서서 정부 측 보고도 있었지만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계를 보면 MBC에 대한 방심위 심의·제재 건수가 70건으로 다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MBC는 수긍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는 공영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소송전을 남발하고 있는데, 사실 공영방송이라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적 다원성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이 노조 가입 인원 가운데 80%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조가 돼 있는데……

또 최근에는 고 오요안나 사건까지 터졌지 않습니까? 지금 모친이 아마 단식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온갖 편파·조작·왜곡 방송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고 또 안으로는 소위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불평등한 처우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결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MBC가 외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달리 이걸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라는 생각이지만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르니까 일단 MBC 경영진하고 대주주 방문진 관계자부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불러 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한번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정현 위원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서 MBC뿐만 아니라 KBS, EBS, 필요하다면 민영방송에 방송과 관련된 질의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저희 과방위의 전체회의를 통해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동안 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청원심사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질의보다는 필요하다면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 아니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MBC의 편파와 조작, 왜곡에 대해서 주장하셨습니다만 저도 회의 속기록에 남겨 둘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MBC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가 70여 건으로 압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윤석열 정권의 MBC 방송장악을 위한 표적심사 때문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심사

결과와 징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방통위 등이 무리한 심사를 진행했고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결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그러면 이것 간사들끼리 좀 더 협의해 보라고 그리고 계속 심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까요?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논의하게끔.

○이상휘 위원 그러시지요,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현안질의하고.

○이정현 위원 우리 청원심사소위에 간사들이 있기는 합니까?

○소위원장 김장겸 아니, 이야기를 해야지요, 양당 간사한테.

○이정현 위원 이거 불부의로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과방위 전체회의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부의로 결론 내시는 것을 이상휘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부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장겸 이상휘 이정현 이주희 이준석 조인철

○첨가 위원(1인)

정동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이재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